

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1. 피상속인 및 신고인(상속인) 인적사항

피상속인	성명		주민등록번호	
상속인	성명		주민등록번호	

2.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 명세

가-1. 금융재산

종류	계좌번호 등	상호	사업자등록번호	단가	가액
				① 합계	

가-2. 금융채무

종류	계좌번호 등	상호	사업자등록번호	단가	가액
				② 합계	

3. 금융재산 상속공제금액

③ 순금융재산가액 (① - ②)	
④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액 (뒷면 작성방법 표 참조)	
⑤ 금융재산 상속공제금액 (③과 ④중 적은 금액 기재)	
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신고인 제출서류	금융재산보유 및 금융채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

작성방법

※ 이 서식은 상속세 신고 중 금융재산 상속공제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22조)와 관련한 공제신고서식입니다.

1. "2.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 명세"의 "가-1. 금융재산"에는 다음의 재산을 적습니다.

가. ①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·적금·부금·계금·출자금·신탁재산(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)·보험금·공제금·주식·채권·수익증권·출자지분·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③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를 말합니다.

나. 금융재산에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.

다. "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"란 주주 또는 출자자(주주 등)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합니다.

2. "2.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 명세"의 "가-2. 금융채무"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된 금융채무를 적습니다.

3. "③ 순금융재산가액"란은 "① 합계"에서 "② 합계"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.

4. "④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액"란은 "③ 순금융재산가액"이 아래 표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적습니다.

순금융재산가액	공제액	순금융재산가액	공제액
2,000만원 이하	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	1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	해당 순금융재산가액 × 20%
2,000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	2천만원	10억원 초과	2억원

※ 계산사례

(단위 : 원)

구분	금융재산(①)	금융채무(②)	순금융재산가액(① - ②)	금융재산상속공제금액
가	40,000,000	25,000,000	15,000,000	15,000,000
나	80,000,000	25,000,000	55,000,000	20,000,000
다	140,000,000	20,000,000	120,000,000	24,000,000
라	1,200,000,000	100,000,000	1,100,000,000	200,000,000

5. "⑤ 금융재산 상속공제금액"란은 "③ 순금융재산가액"과 "④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액"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